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엄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53
------	------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엄셋별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 활동과 일상 생활 상의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문화안전망 자문단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바. 지원 사업(안 제8조).

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문화기본법」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안전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안전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인권·노동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 구축에 따른 계획 수립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존 문화공간 및 사업 평가
3. 문화안전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조사 지원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